

<p>수성을 감안한 것 등을 그 사유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 등 어디를 봐도 적절한 제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미약한 나라의 국민이어서 심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음.</p>	<p>원안가결(재적 16인, 재적 16인, 전원일치)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p>				
<p>6. 결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심사결과</p>	<p>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동의한다.</p>				
<p><명예시민증 수여자 현황></p>					
연번	성명	직업 (서울거주기간)	국적	주요 공적사항	비고
1	Marie · Helene Brasseur (여, 52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26년)	벨기에	· 25년이상 한국에서 간호사, 의사로서 한국의 영세민과 불우 이웃에 봉사로 국제친선 도모 * 의사자격: 한국에서 취득	
2	양건화 (남, 44세)	중국국제항공사 한국지점장 (4년)	중국	· 94년부터 중국 국제항공사의 한국지점장으로 중국 여행사 관계자 서울초청, 관광유치홍보 등 양국간 관광교류에 기여	
3	Hugo Reimers (남, 63세)	MAN B&W 한국대표부장 (10년)	덴마크	· 덴마크 기업가 클럽과 한국의 유럽상공회의소 이사직 등을 역임하며, 한-덴마크·유럽과의 상호 유익한 기업관계 개선 기여	
4	Collette Noir (여, 64세)	사회사업가 (36년)	프랑스	· 한국에 36년간 거주하며 서울의 신림동 등 주로 저소득층과 불우이웃을 위해 상담·교육 등 헌신	
5	Liam Patrick McCarron (남, 57세)	카톨릭 신부 (33년)	아일랜드	· 33년간 서울 카톨릭교구에서 활동하며 대학생 선교 및 병원선교, 호스피스 운동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봉사	
6	Vittorio Di Nardo (남, 63세)	카톨릭 신부 (34년)	이탈리아	· 서울에 가장 오래 거주한 이탈리아인으로 한국내 이탈리아 선교사중 상징적인 인물이며 한~이간 문화이해 증진 기여	
7	Alfonso Wimer (남, 82세)	카톨릭 선교사 (19년)	멕시코	· 12년간 서울시 중구의 마리스트 기술학교에서 고아들과 불우아동을 위해 봉사활동 · 외대교수 재직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봉사로 국제친선 도모	
8	Jean Paul Buys (남, 71세)	카톨릭 신부 (11년)	네덜란드	· 하멜의 한국거주에 대한 역사발간으로 한국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의 한국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 기여 및 양국의 문화적·사회적 협력강화 기여	

연번	성명	직업 (서울거주기간)	국적	주요 공적사항	비고
9	Miguela P. Santiago (여, 65세)	카톨릭 수녀 (23년)	필리핀	· 주한 필리핀인을 위한 권익보호활동 및 한국의 고아, 불우이웃을 위해 헌신	
10	Grigore Scarlatoiu (남, 28세)	방송인 (8년)	루마니아	· 서울대에서 학사·석사과정 졸업, 한국어 연설대회 대상 수상, 국내 라디오·TV 출연, 잡지 기고, 금모으기운동 참여 등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한·루마니아 우의증진에 기여	
11	Rangsit Waesoho (남, 52세)	이슬람교 선교사 (16년)	태국	· 서울의 이슬람 공동체에서 종교활동 헌신으로 이슬람 국가들내에서의 서울위상 제고 기여 및 한국민과 이슬람인들간의 상호 문화·관습 이해증진 기여	
12	Ali Riza Balaman (남, 65세)	외대교수 (13년)	터키	· 터키 일간지에서 서울 관련기사 30회 이상 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영어 저서를 터키어로 번역하는 등 터키와 한국의 문화교류에 기여 및 양국 대학간 교류 지원활동 전개로 우호증진 기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촉구
건의안

1.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국민의 여망입니다.
 - 가. 소비자는 산지가격보다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사 먹어야 하는데도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배추밭을 갈아엎어야 하고 가격이 폭등하면 중간상인만이 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입니다.
 - 나.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생산농민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통구조 개혁이요, 우리 시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행 농안법은 거래행위 제한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 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농수산물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건립한 공영도매시장과 민간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유사

- 도매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중 전체 농수산물 유통량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공영 도매시장만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상의 거래규제 및 영업상의 제한을 받고 있고, 유사 도매시장은 아무런 규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 나. 현행 농안법상 모든 공영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수산물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만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농안법 제28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다. 모든 농수산물은 생산자→수집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소비자에게 유통되도록 강제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다단계유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른 시장에서 경매를 거쳐 전송된 물품도 도매시장법인에 채상장·경매를 강요하고 있어 탈법적으로 형식경매·기록상장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라. 공영 도매시장에서 보다 탄력적인 거래행